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7. 4. 18 (수) 16:00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민경환 의원외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4월 9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4월 11일

3. 제안 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내용 중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를 추가 (안 제1조).

○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 하도록 함(안 제7조).

○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는 **1997년 7월 4일 조례 제2332호** 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 1997년 제정 시행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시행되어 그동안 변경된 관련 법령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 제8호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부분이 1994년 12월 22일 시행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825호에서 당시 중앙행정기관인 **"상공자원부장관"**으로 1997년 12월 13일 시행된 같은 법 제545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되었고, 1994년 12월 23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447호에서는 **"상공자원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1996년 2월 9일에 시행된 시행령 제14909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경기도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을 묶어 **"중앙행정기관"**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 **"산업자**

원부장관"으로 표시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을 포함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 삭제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상공자원부장관**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상공자원부장관**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6.2.9 대통령령 14909호]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2·9>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